

1. 개요			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 정	면적(m ²)	비 고
	당 초	변 경			
대치동 937 일대	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도시설계지구	44,200	대치생활권 중심
2. 상정사유			별시장		
<p>○강남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인 대치생활권중심으로서 본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함.</p>			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지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		
3. 참고사항			제출년월일 : 1995. 5. 6		
○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없음.		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		
○용도지역, 용도지구 변경결정권자 : 서울특별시					
1. 개요			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 정	면적(m ²)	비 고
	당 초	변 경			
개포동 158 일대	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도시설계지구	16,700	개포생활권 중심
2. 상정사유			2. 제안사유		
<p>○강남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인 개포생활권중심으로서 본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함.</p>			<p>○과천~우면산간 도로(광장) 결정시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교통처리에 적정한 광장규모를 결정하여야 했으나, '93.7. 광장결정 당시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우선 경기도에서 요청한 과천~우면산간 도로(광장) 건설구간 중 우리 시 구간(도로 L=180m, 광장 A=34,280m²)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음.</p>		
3. 참고사항			<p>○금번 광장변경은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공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선암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통광장을 확장하는 것임.</p>		
○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없음.			*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: '94.5.20		
○용도지역, 용도지구 변경결정권자 : 서울특별시					
<p>도시계획시설(광장) 변경결정에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					
제출년월일 : 1995. 9.12					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					
1. 건명 : 도시계획시설(광장) 변경결정			(다음 페이지에 계속)		

<p>3. 도시계획시설(광장) 변경결정조서 ○입안내용</p>							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비고		
기정	광장	교통광장	서초구 우면동 422-2 일대	34,280	증)41,760㎡		
변경	"	"	"	76,040	(우면 제2광장)		
<p>○도시계획사항 : 개발제한구역 4. 추진경위 ○'93.7.24 도시계획시설(광장)결정 ○'95.8.14 공람공고 *공람공고시 주민의견 : 없음. *과천~우면산간 도로건설공사 -사업기간 : '93.10~'96.8 -시행자 : 경기도지사 -사업비 : 627억원 -규모 : B=24m, L=4,400m</p>				<p>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제출년월일 : 1995.10. 9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1. 건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2. 제안사유 : 합정동로터리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강변북로에서 동교로로 일방향 진입만을 위한 연결 도로를 설치코자 함.</p>			
<p>3. 주요요지 ○입안내용</p>							
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시점	종점	비고
변경	대로	1류	35~76	25,193	시계 (상암동)	자양동 759의 1	강변북로→동교로 진입을 위한 감속차선 설치(합정동 450-2 주변 확폭 B=5~9m, L=150m)
변경	중로	2류	15~20	2,163	연희동	망원동 218-2	강변북로→동교로 진입을 위한 노선 연장(L=28m)
<p>○지역현황 -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, 도로 4. 참고사항 -도로결정 : 1966.6.21(서고시 제2493호) -공람공고시 주민의견 : 없음. -사유지저축 : 5필지 1,385㎡</p>				<p>제출년월일 : 1995.10.13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1. 건명 : 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가지조성사업구역, 시설) 결정 및 변경결정 2. 제안사유 : 우리 시 3대 유통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중 미설치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코자 함.</p>			
<p>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가지조성사업구역, 시설)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							